

고사목 벌도 작업 중 쓰러지는 고사목에 맞음

재해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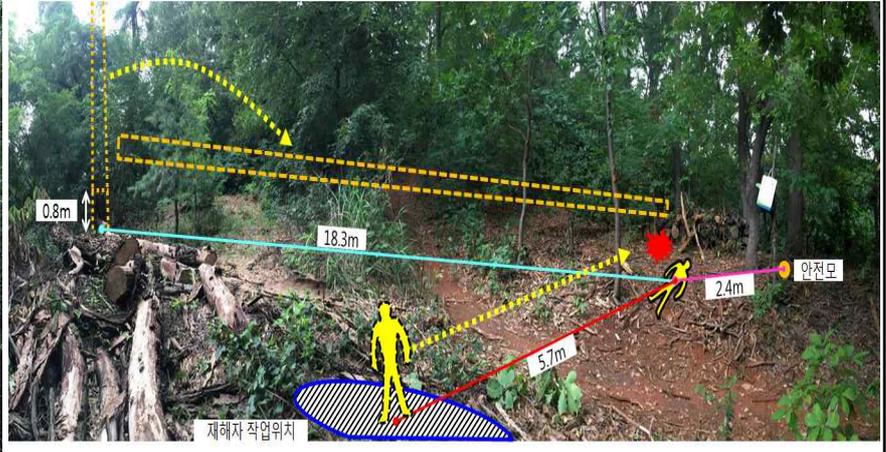
2017년 07월 06일(목) 09:40분경 OO 일대 산책로변 공원에서 고사목(枯死木) 제거를 위해 벌도(나무를 자름)하는 과정에서 길이가 약 19.1m의 벌도된 고사목이 넘어가면서 대피하던 재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임.

재해 관련사진



[사진- 작업상황도]

벌도목(고사목)을 남기기 위한 적절한 각도의 노치 각을 만들었으며, 벌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됨



[사진- 재해발생상황도]

재해자는 벌도목이 넘어가려 하자 피하려고 고사목이 넘어지는 방향으로 대피하던 중 쓰러지는 고사목의 가지에 머리 등을 맞아 발생한 재해로 추정됨

재해발생원인

○ 안전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 미확보

벌도작업시 벌도목에 의한 충돌, 낙하 등의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 미확보.

○ 사전 위험성평가 미실시

벌도작업 등 벌도목에 의한 유해·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유해·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를 위한 위험성평가 미실시.

○ 작업계획서 미작성

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한 작업위치, 작업시간, 작업방법, 안전요원 위치 지정, 작업자 대피로 및 대피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작업계획서 미작성.

재해예방대책

○ 안전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보

벌도작업 시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작업 전에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확보하고, 벌도목을 남기기 전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한 것을 사전 확인한 후 작업 실시.

○ 위험성평가 실시

작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요인에 의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작업 개시 전에 실시하고, 벌도작업시 벌도목이 넘어가기 전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한 것을 사전 확인한 후 벌도작업 실시.

○ 작업계획서 작성

안전한 작업위치, 작업시간, 작업방법, 안전요원 위치 지정, 작업자 대피로 및 대피장소 등 해당 작업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해당 작업 시작 전 작업자에게 주지 및 확인 실시.